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15572 판결 [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155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5555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박연주

변론종결 2021. 10. 13.

판결선고 2021. 10.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55559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691,774원 및 그중 720,522,079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1%, 11,119,695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39,05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1,2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잔액 12억 원”으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2행의 “원고가” 다음에 “이 사건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5.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위 채권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상 채권액만큼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20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대상 채권이 이 사건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채권의 종류 및 액수, 변제기 등을 비롯하여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는 2015. 12. 15.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바 있고, 2019. 3. 13. 이 사건 합의에서는 당시 잔존 차용금 채무를 9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설령 위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이 있더라도 그 채권양도에 따라 변제되었다는 채무액은 이미 2019. 3. 13. 이 사건 합의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용준, 판사 정승규, 판사 김동완